



불만 고발에 관한 단일 규정과 절차 Uniform Complaint Policy & Procedures (UCP)

범위

라치몬트 학교(이하, "차터스쿨")의 규정은 관련되는 연방법, 주법 및 법규를 따른다. 차터스쿨은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연방법, 주법 및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이 있는 지역기관이다. 이 규정에 따라, 조사를 담당할 사람은 조사 대상인 프로그램은 물론 관련 법에 관해서도 정통해야 한다. 이 불만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일관된 불만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1) 모든 보호집단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discrimination), 괴롭힘(harassment), 위협(intimidation) 또는 따돌림(bullying)에 관한 불만으로 이에는 실제 또는 인지된(perceived)차별이 모두 포함된다. 연령, 혈통(ancestry), 피부색, 장애여부, 민족 정체성(ethnic group identification), 성별표현(gender expression),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gender), 유전 정보, 국적, 출신국, 인종(race)이나 민족(ethnicity), 종교, 성, 성적지향성 등의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에 근거한 차별이나, 실제 또는 인지된 위의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에 근거한 차별이 차터스쿨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일어난 경우이다. 그리고,
- (2)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법, 연방법과 법규 위반에 대한 불만: Foster and homeless youth services, No Child Left Behind Act (2001) Programs (Titles I-VII)/Every Student Succeeds Act, Tobacco Use Prevention Education, American Indian Education Centers, After School Education and Safety Programs, Agricultural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Migrant Education Programs, Adult Education Programs, Consolidated Categorical Aid Programs,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LCAP), School Safety Plan, Migrant Education, Career Technical and Technical Education and Career Technical and Technical Training Programs, Child Care and Development Programs, Child Nutrition Programs, Special Education Programs.
- (3)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래와 같이 정의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할 때 요금(pupil fee)을 부과당한 데 관한 불만.
 - a. "교육적 활동(Educational activity)" 이란 학교, 교육구(school district), 차터스쿨 및 카운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초/중등 교육의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인 교과 과정과 교과외 과정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b. "학생요금(pupil fee)"란 학생이나 부모/보호자에게 청구되는 요금, 보증금, 기타 부과금 등으로 이는 교육명령 49011조(Section 49011 of the Education

Code)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 9항 5조(Section 5 of Article IX of the California Constitution)의 위반이다. 이 조항들은 교육적 활동이 학생 가정의 지불 능력, 지불 의사, 또는 특별 면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규정 - *Hartzell v. Connell* (1984) 35 Cal.3d 899). 학생요금(pupil fee)에는 아래의 모든 것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i. 수업이나 활동이 선택과목인지 필수과목인지 아니면 학점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수업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또는 수업이나 교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청구하는 수업료
 - ii. 학생에게 청구하는 자물쇠, 사물함, 책, 교실 장비, 악기, 제복(uniform)이나 그 외 재료나 기구에 대한 보증금이나 대금.
 - iii. 교육적 활동에 관련하여 재료, 물품, 장비 또는 제복을 입수하기 위해 학생이 해야되는 구매.
- c. 학생요금 불만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거를 첨부하거나 학생요금 관련 법규를 불이행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d. 차터스쿨이 학생요금 불만 고발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차터스쿨은, 해당 분야에서 피해입은 모든 학생, 학부모, 보호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차터스쿨은 피해입은 모든 학생, 학부모, 보호자 등 (캘리포니아)주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확립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전액 변제를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e. 이 조항은, 자발적인 기금, 재산 기부 또는 모금 행사에의 자발적인 참여나 교육구, 학교 또는 기타 기관이 모금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상품을 주거나 표창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4) 적용가능한 경우, Local Control Funding Formula를 관장하는 요건이나 교육령(Education Code)의 Section 47606.5와 Section 47607.3의 불이행에 관한 불만
- (5) 학교 캠퍼스 안에서 학생에게 수유할 수 있는 권리인 교육령 222 조(Education Code Section 222) 불이행에 대한 불만. 차터스쿨이 이 불만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거나 항소절차 때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차터스쿨은 피해 학생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차터스쿨은 모든 개인의 개인정보 보장 권리를 인정하며 존중한다.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관한 불만이 접수되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절차상의 성실성을 보존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터스쿨은 불만 고소인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여기에는 고소인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차터스쿨은 적절한 선에서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차터스쿨은 사안에 따라 학생지원 서비스 디렉터(Director of Student Support Services)나 지정된 담당자가 결정하면, 조사 진행이나

절차 수행을 위해서 고소인이나 불만 고소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차터스쿨은 불만 고소 절차에서 고소인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복도 금하는데 여기에는 고소인의 불만 접수 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고소인의 지위, 성적, 또는 과제 등에 어떤 형식으로도 영향을 줄 수 없다.

Compliance Officers (처리 담당관)

이사회는,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차터스쿨의 법준수를 보장하도록 아래의 처리 담당관(들)을 지정한다:

Myra Salinas
Director of Student Support Services (학생지원 서비스 디렉터)
Larchmont Schools
444 N. Larchmont Blvd., #207
Los Angeles, CA 90004

학생지원 서비스의 디렉터나 지정된 담당관은 불만 내용을 조사할 지명된 직원이 담당 조사하게 될 프로그램과 법규에 대해 정통할 것을 보장한다. 지명된 직원은 학생지원 서비스 디렉터나 지정 담당관이 결정한 경우에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학생지원 서비스 디렉터에 대한 불만이 접수된 경우, 이 사건의 처리 담당관은 이사회의 회장(President of the Charter School Board of Directors)이 된다.

통보(Notifications)

학생지원 서비스 디렉터나 담당관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자문 위원회, 사립 학교 관계자와 다른 관련 당사자(예, 성인 교육)에게 차터스쿨의 불만 고발에 대한 단일 규정과 절차에 대해 매년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연례 통보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필요하다면 교육령 48985조 (section 48985 of the Education Code)에 따라, 차터스쿨 재학생의 15% 이상의 학생이 영어가 아닌 단일 외국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할 때 해당 언어로 작성한다.

학생지원 서비스 디렉터나 담당관은 차터스쿨의 불만 고발에 대한 단일 규정과 절차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여분의 사본을 준비해 둔다.

연례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a) 차터스쿨은 연방법, 주법과 법규를 따를 근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진술.
- (b)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요금 (pupil fee)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

- (c) 불만 고발을 접수할 직원, 직위, 또는 부서를 명시하는 진술.
- (d) 고소인은 차터스쿨의 결정을 통보 받은지 15일 안에 서면으로 차터스쿨의 결정에 대해 CDE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 (e) 고소인에게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에 관한 주법과 연방법에 의거한 민사상 배상 가능성과 교육법 (Education Code § 262.3)에 의거한 항소 권리에 대해 고지하는 진술.
- (f) 지역 교육 기관의 불만 고발 절차에 관한 사본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는 진술.

절차 (Procedures)

다음의 절차는 차터스쿨이 연방법이나 주법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 모든 불만 고발 사안에 적용된다. 처리 담당관(Compliance officers)은 모든 불만 고발 사안과 그에 따르는 대응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사안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는 불만이 접수되었을 때, 불만에 관한 회의나 청문회 일정이 잡혔을 때 및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고지한다.

- 1 단계: 불만 고발 접수 (Filing of Complaint)

어느 개인, 공공 기관, 조직이라도 차터스쿨의 불이행 혐의에 관해 서면으로 고발 접수할 수 있다.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 고발은,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라고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육(6)개월 이내이거나 또는 고소인이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라고 추정되는 사건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처음 얻은 날로부터 육(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불만 고발은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라고 추정되는 사건을 직접 당한 당사자가 접수하거나 또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이러한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접수할 수도 있다.

학생요금 불만은 반드시 추정되는 위반 사실이 일어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불만 고발은 반드시 처리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담당관은 접수된 각각의 불만고발을 코드 번호와 날짜 스탬프를 첨부해서 일지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만일 고소인이 장애나 문맹으로 인해 서면으로 불만 고발을 할 수 없으면 차터스쿨 직원이 고소인의 불만 고발 접수를 도와야 한다.

- 2 단계: 중재 (Mediation)

불만 고발이 들어 온 지 삼(3)일 이내로 처리 담당관은 중재를 이용할 가능성에 관해 고소인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만일 고소인이 중재 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처리관은 이 절차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관한 불만 고발의 중재를 개시하기 전에, 처리 담당관은 반드시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자 (mediator)와 개인 비밀 정보를 공유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만일 중재 절차를 통해 법적인 조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처리 담당관은 그 불만 고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고소인이 시간 연장에 대해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의 이용은 불만 고발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해야 할 차터스쿨의 시간 일정을 연장시킬 수 없다.

- 3 단계: 불만 고발에 대한 조사 (Investigation of Complaint)

처리 담당관은 고발이 접수된지, 또는 불만의 중재가 실패한 지 오(5)일 안에 조사를 위한 회의를 열도록 장려된다. 이 회의는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대리인이 불만 내용을 구두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소인이나 그 대리인은 추정된 불만 및 그 불만 내용을 지원할 증거 또는 증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고소인이 차터스쿨의 조사관 (investigator)에게 불만 고발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나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 또는 조사 협조를 거부하거나 협조에 실패한 경우,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행동에라도 참여하면 이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불만 고발 사건 자체가 기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터스쿨이 불만 혐의에 관련된 기록이나 기타 정보를 조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 또는 조사 협조를 거부하거나 협조에 실패한 경우,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행동에라도 참여하면 이는,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위반이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보상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4 단계: 대응 (Response)

고소인이 서면으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한, 처리 담당관은 차터스쿨의 조사와 결정을 서면 보고서로 준비하여, 아래의 제 5단계에 기술된 대로 차터스쿨이 불만 고발을 접수한 지 육십(60)일 이내로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5 단계: 최종 서면 결정 (Final Written Decision)

차터스쿨의 결정은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차터스쿨의 결정은 영어로 작성되며 가능하거나 법으로 요구된 경우 고소인의 언어로도 작성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발견된 사실 관계.
2. 법적 결론.
3. 불만 고발에 대한 최종 결론 (Disposition of the complaint).

4. 결론에 대한 논리적 근거
5. 정당화 되었다면, 개선 조치
6. 차터스쿨의 결정이 난 지 15일 내에 CDE에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와 항소 절차에 대한 고지.
7. (캘리포니아) 주법 하에 발생한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 고발의 경우, 민사상 보상을 추진하기 전에 고소인은 반드시 CDE에 항소를 신청한 후 육십(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고지.
8. 연방법 하에 발생한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의 경우에는 연방 교육부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인권 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언제라도 불만 고발을 접수시킬 수 있다.

불만 고발의 결과로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결정 보고문은 유효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차터스쿨이 기대하는 바가 그 직원에게 전해졌다고만 간단하게 서술한다. 보고문은 어떤 징계 조치가 취해졌는 지에 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항소

카테고리 프로그램 불만 관리 사무소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Office)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5

차터스쿨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차터스쿨의 결정을 통보 받은 지 십오(15)일 안에 CDE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 CDE에 항소할 경우, 고소인은 반드시 결정에 항소하는 근거 및 사실 관계가 부정확한지, 법적용이 잘못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항소에는 지역적으로(locally) 접수한 불만 고발의 사본과 차터스쿨의 결정 보고문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차터스쿨의 결정에 고소인이 항소했다는 CDE의 통보가 있으면, 학생지원 서비스 디렉터나 지정 담당관은 CDE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전송해야 한다:

1. 최초 불만 고발서 사본.
2. 결정 보고문 사본.
3. 결정 보고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차터스쿨이 실시한 조사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요약.
4. 조사 기록 사본 - 모든 기록, 면담, 모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조사관이 수집한 서류 등 (이에 국한되지 않음).
5.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보고문.

6. 차터스쿨의 불만 고발 절차 사본.

7. 그 외 CDE가 요구한 관련 정보.

차터스쿨에 불만이 접수된 지 육십(60)일 안에 차터스쿨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Title 5,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Section 4650의 조건에 맞는 상황이 있을 경우, CDE는 차터스쿨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불만 고발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아래 목록의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UCP 웹 페이지(<http://www.cde.ca.gov/re/cp/uc/index.asp>)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UCP 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연락처

평생 교육, 평생 교육 사무소
916-322-2175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After School Division(방과 후 교육 부서)
916-319-0923

농업 직업 교육
Career and College Transition Division(경력 및 대학 진학 부서)
916-319-0887

미국 인디언 교육 센터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 평가
Coordinated Student Support Division(조율된 학생 지원 부서)
916-319-0506

직업기술 및 기술 교육, 직업 기술,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교육 및 지역 직업 센터와 프로그램,
Career Tech Ed (CTE) 리더십 및 교습 지원 사무소
916-322-5050

아동 보육 및 발달(캘리포니아주 프리스쿨 포함)
조기 교육 및 지원국(Early Education and Support Division, EESD)
916-322-6233

아동 영양
Nutrition Services Division(영양 서비스 부서)
800-952-5609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 학생 수유 시설 및 LGBTQ 자료
Education Equity UCP Appeals Office(공평한 교육 UCP 청원 사무소)
916-319-8239

현재 학군에 등록된 입양, 노숙자 학생 및 이전 청소년 법원 보호 학생의 교육
Coordinated School Health and Safety Office(조율된 학교 보건 및 안전 사무소)
916-319-0914

LCAP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내용과 절차

Local Agency Systems Support Office(지역 기관 시스템 지원 사무소) 캘리포니아 교사를 위한 동료 지원 및 검토 프로그램, *School Fiscal Services Division*:

916-322-3024

ESSA / 낙오 아동 방지법 프로그램 (이중 언어 교육, 보상 교육, 병합된 카테고리 별 지원, 경제 영향,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이민자 교육, 학교 안전 플랜)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Office(분야별 프로그램 민원 관리 사무소)

916-319-0929

체육: 지도시간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Office(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사무소)

916-323-5847

교육적 내용이 없는 과정 기간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Office(분야별 프로그램 민원 관리 사무소)

916-319-0929

학교 시설(윌리엄스 민원)

School Facility Planning Division(학교시설 계획 부서)

916-322-2470

특수 교육

Procedural Safeguards and Referral Services Unit(절차적 안전 및 기준 서비스 부서)

800-926-0648

흡연 방지 교육

Coordinated School Health and Safety Office(조율된 학교 보건 및 안전 사무소)

916-319-0914

학생 수업료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Office(분야별 프로그램 민원 관리 사무소)

916-319-0929

민사상 배상 (Civil Law Remedies)

고소인은 차터스쿨의 불만 고발 절차 범위 밖에서 가능한 민사 배상책을 추구할 수 있다.

고소인은 중재센터나 공공/민간 변호사의 도움을 추구할 수 있다.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배상의 범위는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중지 명령(injunctions)과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s)이 포함된다. 하지만, 주법 아래서 발생한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경우에는 민사상 보상을 추진하기 전에 고소인은 반드시 CDE 에 항소를 신청한 후 육십(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시 중지기간은 구제명령 (injunctive relief)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차터스쿨이 제 시간 안에 적절하게 고소인에게 불만을 고발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했을 때에만 5 CCR 4622 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UNIFORM COMPLAINT PROCEDURE FORM

불만 고발 절차에 관한 양식

성 Last Name: _____ 이름 Name /중간이름 머릿글자 MI: _____

학생이름 Student Name (해당되면): _____ 학년 Grade: _____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주소 Street Address/Apt. #: _____

시 City: _____ 주 State: _____ 우편번호 Zip Code: _____

집전화 Home Phone: _____ 휴대전화 Cell Phone: _____ 직장전화 Work Phone: _____

추정된 위반이 있었던/있는 학교/사무실 School/Office of Alleged Violation: _____

불이행 혐의의 경우, 불만 고발에 언급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해당되면, 표시하십시오. For allegation(s) of noncompliance, please check the program or activity referred to in your complaint, if applicable:

- | | | |
|--|---|---|
| <input type="checkbox"/> Every Student Succeeds Act/No Child Left Behind (Titles I-VII) 모든 학생이 법안을 통과 / 자녀가 남아 있지 않음 (타이틀 I-VII) | <input type="checkbox"/> Local Control Funding Formula 로컬 컨트롤 자금 조달 공식 | <input type="checkbox"/> Nutrition Services 영양 서비스 |
| <input type="checkbox"/> English Learner Programs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 <input type="checkbox"/> Education of Pupils in Foster Care, Homeless, and former Juvenile Court Pupils now enrolled 위탁 보호, 노숙자 및 전 청소년 법원 학생의 교육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Special Education 특수 교육 |
| <input type="checkbox"/> School Safety Plans 학교 안전 계획 | <input type="checkbox"/> Pupil Fees 학생 요금 | <input type="checkbox"/> Physical Education Instructional Minutes 체육 교육 수업 시간 |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혐의인 경우, 고발 내용에 언급된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의 이유를 표시해 주십시오. For allegation(s) of unlawful discrimination, harassment, intimidation or bullying, please check the basis of the unlawful discrimination, harassment, intimidation or bullying described in your complaint, if applicable:

- | | | |
|--|--|---|
| <input type="checkbox"/> Age 나이 | <input type="checkbox"/> Gender / Gender Expression / Gender Identity 성별/성별표현/성별 정체성 | <input type="checkbox"/> Sex (Actual or Perceived) 실제 또는 인지된 성 |
| <input type="checkbox"/> Ancestry 혈통 | <input type="checkbox"/> Genetic Information 유전 정보 | <input type="checkbox"/> Sexual Orientation (Actual or Perceived)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성 |
| <input type="checkbox"/> Color 피부색 | <input type="checkbox"/> National Origin 출신국 | <input type="checkbox"/> Based on association with a person or group with one or more of thes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실제 또는 인지된 위의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 |
| <input type="checkbox"/> Disability (Mental or Physical)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 <input type="checkbox"/> Race or Ethnicity 인종 또는 민족 | |
| <input type="checkbox"/> Ethnic Group Identification 민족집단 정체성 | <input type="checkbox"/> Religion 종교 | |

1. 불만의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된 사람의 이름, 날짜, 증인 여부 등 불만을 조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Please give facts about the complaint. Provide details such as the names of those involved, dates, whether witnesses were present, etc., that may be helpful to the complaint investigator.

2. 차터스쿨에 소속된 사람과 불만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와 이야기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Have you discussed your complaint or brought your complaint to any Charter School personnel? If you have, to whom did you take the complaint, and what was the result?

3. 귀하의 불만에 관련되거나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Please provide copies of any written documents that may be relevant or supportive of your complaint.

증빙 서류 첨부 I have attached supporting documents. 네 Yes 아니요 No

서명 Signature: _____ 날짜 Date: _____

불만 고발 내용과 관련서류를 우편을 통해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 Mail complaint and any relevant documents to:

Myra Salinas
Director of Student Support Services
Larchmont Schools
444 N. Larchmont Blvd., #207
Los Angeles, CA 90004